농림축산검역본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3.(화) 11:00 / 2026. 11. 4.(수) 조간 배포 2026. 11. 3.(화) 06:00

#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,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(KOLAS) 인정 획득

- 올해 11월부터 유럽행 반려동물 대상 광견병 항체가 검사 가능, 검사 기간 단축으로 여행객 편의 증진
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, 이하 '검역본부')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10월 30일(금) 한국인정기구(KOLAS)*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(ISO/IEC 17025)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. 유럽행 반려동물은 유럽연합(EU)의 수입(반입) 위생 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* 한국인정기구(KOLAS):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(ISO/IEC)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·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기구

그간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*를 포함해 3개 민간 검사기관**에서 하고 있었으나, 올해 4월 유럽연합(EU)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경북 김천의 검역본부 바이러스 질병과에서만 가능했었다. 이에 따라 전국의 검사 의뢰가 김천 한 곳으로 집중되고 시료 운송 거리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검사 기간 증가로 반려동물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.

*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실적('23~'25): ('23) 5,536건 ('24) 4,727 ('25) 5,118

** 국내 민간 광견병 검사기관(3): ㈜중앙백신연구소(대전), ㈜코미팜(경기), ㈜고려비엔피(충남)

이에 검역본부는 유럽연합(EU)의 규정이 바뀐 직후부터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신속하게 준비하였다. 이를 위해 △품질 관리 체계 구축, △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, △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 인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쳤다.

* 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말바이러스성동맥염,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, 가금티푸스, 가금 살모넬라증, 추백리에 이어 광견병까지 6종에 대한 국제공인 인정 확보

이번 인정으로 11월부터는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, 동물병원 수의사는 그간 필요했던 시료채취내역서 등 별도의 수기 작성 서류 없이 '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'으로 검사 의뢰만 하면 되는 등 관련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. 그 결과 기존에 2~3주 정도 소요되던 검사 기간이 10일 내외로 줄어들어 여행객들의 편의도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검사 신청·결과 확인 등 검역 서비스 전반의 편의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. 이를 위해 민간 검사기관도 추가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 등을 통해, 더 많은 검사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.

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"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, 개·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"라고 하면서, "앞으로도 국제기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,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를 넓혀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라고 말했다.

붙임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및 Q&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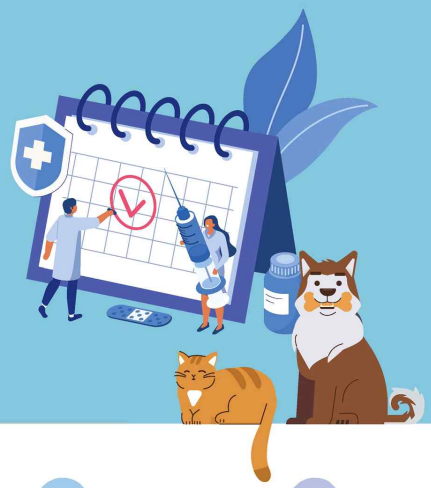
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농림축산검역본부<br>동물검역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재명 (054-912-043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장우석 (054-912-0422) |
| 담당 부서 | 농림축산검역본부<br>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은옥 (02-2650-0656) |
| | | 담당자 | 주무관 | 김연주 (02-2650-0670) |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붙임** | **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및 Q&A**

농림축산검역본부

#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



**1 채혈**

광견병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하여 백신접종 4주 후 채혈을 권장합니다.

* 검사시기, 백신접종일, 혈액 채취일 등과 관련하여 상대국 검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2 시료준비**

채혈한 혈액은 항응고제가 없는 튜브에 넣어 원심분리 합니다. 혈청(상층액) 1ml을 멸균용기에 넣고 마이크로칩 번호를 튜브에 표기한 후 냉장 상태로 신속히 송부합니다.

*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생물의 오염, 용혈, 지방혼탁 등에 유의합니다.

**3 검사신청**

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합니다. 신청하신 정보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항이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 접수 후 수정 요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4 검사증명서 발급**

인터넷 검사신청, 수수료 납부, 시료도착이 모두 확인되면 접수가 이루어지며, 접수된 순서대로 검사가 진행됩니다.

## 광견병 형광항체 바이러스 중화시험이란?

**FAVN test**
(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zation Test)

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광견병국제공인검사기관으로서 매년 정도관리를 받고 있으며,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(FAVN Test)으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본 검사는 동물의 국가 간 이동 전, 광견병예방접종에 대한 항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검사가 의뢰된 혈청은 전처리 후 광견병 바이러스와 중화반응을 실시합니다. 이후 감수성 있는 세포를 주입하고 형광항체로 염색하여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는 최고희석배수를 국제표준혈청과 비교하여 역가(IU; International Unit)로 산출합니다. 항체가 **0.5IU/ml 이상**이면 국내외 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

#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Q&A



## Q1 검사신청 방법은?

반려동물 보호자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수의사에게 검사 의뢰를 요청합니다. 수의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내 **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(https://eminwon.apqa.go.kr/rabies/)**에 접속하여 회원가입(승인절차 필요) 후 검사를 신청하고, **두당 110,000원의 수수료**를 납부한 후 준비한 시료를 신속히 냉장 상태로 송부합니다.

**입금계좌 / 예금주** 농협 301-0084-795121 /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
※ 수수료 납부시 신청시스템 내 카드결제 가능

**입금자명** 신청 동물병원 또는 수의사명

**시료 송부처**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(우. 07670) 전염병검사과 광견병 담당자 앞

〈검사신청시 유의사항〉
- 인터넷 신청, 수수료 납부, 시료의 도착이 모두 확인되면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됩니다.
- 마이크로칩번호를 혈청시료 튜브에 기재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Q2 검사 소요기간은?

광견병 항체검사의 **민원처리 기한은 주말,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**입니다. 시료의 상태(재검 유무) 및 실험실 상황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
## Q3 검사증명서의 수령은?

광견병 항체가 검사 증명서는 담당 검역관이 서명 후 신청한 동물병원으로 빠른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. 동물병원에서는 수령한 검사증명서에 **검사 신청한 수의사가 서명한 후 보호자에게 전달**합니다. 검사신청 시스템에서 검사결과는 확인 가능하나 출력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수수료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하단에서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## Q4 검사증명서의 분실 및 재발급은?

증명서를 분실하신 경우 신청 시스템 내 Q&A 게시판을 통해 요청 시 재발행해 드립니다. 증명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, **서류(사유서, 증빙자료, 기발급 증명서 반납) 검토 후 재발행** 해 드립니다. 단순 오기로 인한 재발행 증가는 고유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신청 시 정보 기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마이크로칩번호, 혈액채취일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.

**검사증명서 수정 재발급 증빙자료 기준**

| 수정항목 | 증빙자료 |
|---|---|
| 소유자 정보 |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(APMS) 접속정보 |
| 동물 정보 | |
| 백신접종 정보 |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|

## Q5 검사 신청 시 사진을 꼭 등록해야 하나요?

수출검역 강화조치에 따라 수의사는 광견병항체검사 의뢰 시, 개체(개)의 사진*을 등록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전염병검사과로 검사 신청 시, 신청시스템 상에 의뢰 동물의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.

* 사진 기준 : 개의 경우 (모든 연령) 전신 전면, 측면 / (12개월령 이하) 구강 전면, 측면 추가

## Q6 기타 문의사항은?

**수출입 반려동물 광견병항체검사(FAVN) 관련 문의**
**(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)**
02-2650-0657

**기타 검역관련 문의(인천공항지역본부 민원실)**
032-740-2660(T1), 032-740-2028(T2)